

<p>□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사업소 구조조정 완료에 따라 현재 개별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본청의 실·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일조례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 본청 실·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실의 시정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신설되는 정보화기획단 소관으로 이관하고 - 보건복지국에는 노숙자, 부랑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여성보호,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에게,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이관하였으며 - 문화관광국에 2002년 월드컵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도시계획국의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1부시장 산하의 정보화기획단 소관으로 이관하였음. ○ 제3장의 직속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소방학교, 농업기술센터, 시립기능대학교 등 7개 기관을 두고 -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와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를 각각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 관한조례와 서울시립기능대학운영에 관한조례로 하고 조문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하여 시행하며 -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개정('98.8.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 제4장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본부, 24개 사업소에서 기존 건설시험소와 공업시험소를 품질시험소로 통합하고, 시립미술관을 신설하여 27개 사업소로 하는 것임. ○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직속기관 및 제4장의 사업소설치조 	<p>레 통폐합으로 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등 31건을 폐지하고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등 35개 조례는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명칭, 직위 등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p> <p>□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개정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립기능대학은 현행 설치조례가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99년도 신입생 모집에 다기능 기술자 2년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사료되며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거 1급~3급의 실·국장급 담당관의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4급 상당의 과·담당관의 설치개념과 분리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동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u> 檢討報告</p>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의견</p> <p>□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총수의 구분에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31명에서 130명을 감축한 11,40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3명에서 23명을 감축하여 200명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현행대로 332명으로 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원 4,593명은 소방과출소 5개소(신당, 창동, 수색, 개포, 가락) 및 성동소방서 수난구조대 신설과 119종합방재센터 보강에 따른 소요인력 153명을 증원하여 4,74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정원총수 16,679명의 증·감은 없습니다. <p>□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개 대상기관의 총 정원을 13,741명에서 6.6%에 해당되는 906명을 감축하여 12,835명으로 하는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는 금번 94개 기관에서 264명을 감축하고(직영사업소 83개 기관 인력감축 422명, 시의회사무기구 인력감축 23명, 민간위탁 등 대상 9개 기관의 위탁 전 감축 91
--	---

명, 기구신설 및 보강에 따른 증원 119명, 소방과출소 신설 등으로 인한 소방인력 증원 153명),

2차는 민간위탁 및 법인화 등을 시행할 때('99년 7월 이후) 대상 10개 기관에서 64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1차 정원조정안에 의하면, 정원총수는 16,679명에서 264명을 감축한 16,4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11,531명에서 394명을 감축한 11,137명으로, 소방직공무원은 4,593명에서 4,746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223명에서 200명으로, 교육공무원은 현행대로 332명으로 구분하여 경하여야 하나 정원총수를 조정하지 않고 집행기관 정원을 소방직 공무원 증원인력 15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 감축인원 23명을 제외한 130명만을 감축한 11,401명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98.4.30 제정)가 '99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인 도로, 하수 시설물관리를 서울시에서 환수함에 따른 소요인력 214명을 증원해야 하고,

또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이 3월 중 시달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4월중 추진되어야 하므로 금번 구조조정에 의한 1차 순감축인원 264명은 정원규칙으로만 감축운영하고 조례로는 현행 정원 총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방직공무원 증원인력만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감축인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 총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 다만, 서울시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 결과가 조례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소방인력은 현행 조례상 총 정원 16,679명의 27.5%인 4,593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표준정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금번 소방과출소 신설 등에 따른 소요인력

153명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감축정원에서 충원해야 하는 결과는 정원관리 운용상 불합리하고,

또한, 앞으로도 소방인력은 계속 기구신설 등에 따라 증원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원과 같이 소방공무원도 표준정원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므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표준정원 : 인구수, 자치구수, 일반회계 총 결산액 등에 일정변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현재 서울시 표준정원 16,679명)

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 및 管理運營委託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 중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사업관, 시립동부 및 남부청소년회관과 본 조례 제정('98. 4. 30)시 누락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시립신림 및 구로청소년상담센터와 시립청소년종합상담실을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위탁사무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금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위탁사무의 주관국(과)과 일부 기존 공공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계속 확대될 추세로 전망되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사무구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가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대상 사무와 위탁에 따른 기본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위탁사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별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